#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15 발의연월일: 2022. 9. 23.

발 의 자:배현진·황보승희·이철규

임병헌 · 최형두 · 이용호

정희용 · 김성원 · 조명희

서일준 · 정점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개념이 한정적임.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60년간 문화재 행정의 기본틀로써 그 역할을 해 왔으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단순한 재화의 의미를 뛰어 넘는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보다 타당함. 즉, 문화유산은 재화의 의미를 넘어 유·무형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 념으로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임.

또한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제명도 동법이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그 제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안 번호 제1752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 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 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5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교육의"를 "문화유산교육의"로 한다.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문화재"란"을 ""지정문화유산"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한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한문화재"를 "지정한문화유산"으로, "지정한문화재"를 "지정한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재"를 "등록한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재"를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재"를 "등록한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 주변"을 "문화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제2조제9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란"을 ""국외소재국가유산"이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란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문화재데이터"란 문화재지 능정보화"를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이란"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이란"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의"를 "문화유산보호의"로 하고, 같은 조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나 문화재"를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 문화유산을"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하여는"을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문화재기본계획의"를 "문화유산기본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 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 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기본계획에" 를 "문화유산기본계획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 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제5호의2·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하며, 제7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3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4 중 "문화재교육에"를 "문화유산교육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기본계획을"을 각각 "문화유산기본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기본계획을"을 "문화유산기본계획을"로, "문화재에"를 "무화유산에"로 하다.

제6조의2의 제목 "(문화재의 연구개발)"을 "(문화유산의 연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기본계획에"를 "문화유산기본계획에"로 한다.

제7조의2 중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제1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 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문화재위원회에는"을 "문화유산위원회에는"으로,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문화재가"를 "지정문화유산이"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정보체계를"을 "문화유산정보체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정보체계"를 "문화유

산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정보체계의"를 "문화유 산정보체계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정문화 재의"를 각각 "지정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정 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 은 항 단서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지정문화재의"를 "지정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 재를"을 "문화유산을"로, "지정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 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지정문화재의"를 각각 "지정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 화재와"를 "등록문화유산과"로, "지정문화재등"을 각각 "지정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문화재등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한다.

제14조의5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전단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활동의"를 "문화유산보호활동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각각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 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활동의"를 "문화유산보호활동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매매업 자가"를 "문화유산매매업자가"로, "문화재 관련 소양"을 "문화유산 관 련 소양"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를 "문화유산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국유문화재와"를 "국유문화유산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 문화재"를 "시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문화재교육의"를 각각 "문화유산교육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교육의"를 "문화유산교육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의"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중 "문화재교육의"를 "문화유산교육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4의 제목 중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을"로,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재교육을"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교육에"를 "문화유산교육에"로 한다.

제22조의5의 제목 중 "문화재교육의"를 "문화유산교육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의"를 "문화

유산교육의"로 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교육의"를 "문화유산교육의"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8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를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의"를 "등록문화유산의"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을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을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를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2조의9의 제목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각각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한다.

제22조의10의 제목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중 "문화재데이터"를 각각 "문화유산데이터"로 한다.

제22조의11의 제목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각각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를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로 한다.

제22조의12의 제목 중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문화유산지능정보화"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데이터"를 "문화유산데이터"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문화유산데이터"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문화유산 보존·관리"로, "문화재 활용"을 "문화유산 활용"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중"을 "문화유산 중"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를 "사적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을 "사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사적"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의"를 "문화유산위원회의"로, "민속문 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를 "국가민속문화유산 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민속문화재의"를 "국가민속문화 유산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민속문화재를"을 "국가민속문화유산을"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0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유산 지정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중요문화재"를 "중요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이하 "임시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을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

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임시지정문화재에"를 "임시지정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중 "임시지정문화재의"를 "임시지정문화유산의"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은"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이"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문화재의"를

제49조제1항 본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

"문화유산의"로 한다.

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52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및 민속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하며, 같은 조 제2항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을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을"로, "그 문화재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을"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를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

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을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등록문화재에"를 "국가등록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문화재"를 "해당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하

고, 같은 조 중 "국가등록문화재인"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유산의 등록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는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 문화재"를 "아니한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이하 "일 반동산문화유산"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반 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 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 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 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 화유산"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문화재감정위원의"를 "문화유산감정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문화재감정위원"을 각각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일반동산문화재에"를 "일반동산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국유문화재에"를 "국유문화유산에"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를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유문화재가"를 "국유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유문화재"를 각각 "국유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3조 중 "국유문화재를"을 "국유문화유산을"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를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문화재"를 "국유문화유산"으로, "문화재의"를 각각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64조의4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국외문화재재단"을 "국외문화유산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외문화재재단"을 각각 "국외문화유산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을 "국외문화유산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5조 중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6조 본문 중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을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9조의2의 제목 중"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9조의3의 제목 중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재 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각각 "국외소 재국가유산의"으로, "국외문화재재단"을 "국외문화유산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은"을 "국외문화유산재단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에는"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에"를 "국외문화유산 재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의"를 "국외문화유 산재단의"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문화재재단은"을 "국외문화유산재 단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국 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 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각각 "국외소재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외소재문화 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외소재문화 재의"를 "국외소재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및 제10호 중 "국외문화재재단의"를 각각 "국외문화유산재단의"로 하고, 같은 조제7항 중 "국외문화재재단은"을 "국외문화유산재단은"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중"을 "문화유산 중"으로, "시·도지정문화재로"를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아니한 문화재"를 "아니한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및 다목은 제외한다)및 민속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 기념물및 민속문화유산"으로,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화유산지정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제6항 중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시·도지정문화유산과문화유산자료"로,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을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으로,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자,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0조의2의 제목 중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중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시·도에 문화재위원회"를 "시·도에 문화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를 각각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문화재매매업 등"을 "문화유산매매업 등"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을 "유형문화유산이나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을"로,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중 "문화재매매업의"를 "문화유산매매업의"로, "문화재매매업을"을 "문화유산매매업을"로,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

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관리학"을 "문화유산관리학"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한다.

제77조의2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매매업을"을 "문화유산매매업을"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79조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 매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

은 항 제4호 본문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80조의2 본문 중 "문화재매매업자가"를 "문화유산매매업자가"로, "문화재매매업자에게"를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로 한다.

제10장의2의 제목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80조의3의 제목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 1. 지정문화유산
- 2. 등록문화유산
- 3. 임시지정문화유산

제80조의4의 제목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각각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로,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로, "문화재 관련"을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문화재 관련"을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문화재 관련"을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문화재 관련"을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한다.

제80조의5의 제목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각각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역문화재돌봄 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80조의6의 제목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

산돌봄센터"로 한다.

제80조의7의 제목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한다.

제82조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의3제1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 화유산이"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중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을 "사적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 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 매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한 문화재"를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 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문화재 보존·관리"를 "문화유산 보존·관리"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문화재조사"를 "문화유산조사"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반출한 문화재를"을 "반출한 문화유산 을"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 재를 국외로"를 "문화유산을 국외로"로, "문화재를 다시"를 "문화유산 을 다시"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90조의2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의"로 한다.

제91조 중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동산문화재인"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인"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를"을 "제1항·제2항을"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장 대5항 본문 중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한다.

제94조 제1호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이나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같은 조 제2호 "지정문화재나임시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이나임시지정문화유산을"로 한다.

제95조 중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을 "사적"으로 한다.

제96조 중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이"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중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호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01조의2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제7호·제9호의2·제9호의3"을 "제40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호 또는 제9호"를 "제8호"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본다.
- 제3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 재문화재재단은 이 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 ④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 재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본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 제5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문화재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6조(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교육지원센터로 본다.
- 제7조(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 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 제8조(매매 등의 영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본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②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100분의 50	없음
등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 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	없음	100분의 50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100분의 100	100분의 100

④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0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자연유산"으로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
  -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 (6)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 (7)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측정망 설치
  -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 (9)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0)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 조성(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수목원 조성
- (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 (1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보수
- (1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등의 설치
- (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 (16) 「지하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설치
- (1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보수
-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 (1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석유의 탐사·개발·비 축 및 수송사업
-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를 "「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제71조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제71조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제42조에따른 시·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제44조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후단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제1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로,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로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 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보호"로 한다.

-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나목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고, 다목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B)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 산 및 그 보호구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그 보호구역
- 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 률」"로, "시·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로, "다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법」에"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의"로, "시·도지정문화재의"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로 한다.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 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보호물"은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자연유산·등 록문화유산 · 보호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등록문화재로"를 "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 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로,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포함한다)"를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면적을 포함한다)"로, 같은 조 아목 중 "「문화재보법」 제74조제2항"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으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나목 중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 구역의 산지"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의2의 제목 중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으로, 같은 조 각 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를 "(문화유산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 (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이나"를 "문화유산자료등이나"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이나"를 "문화유산자료등이나"로 한다.

제75조 중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②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유문화재"를 "국유문화유산의"로, "국유문화재"를 "국유문화유산"으로 한다.

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의 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②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연유산 및 보호구역 "으로 한다.

③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재"로 한다.

②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국유문화재"를 "국유문화유산"으로 한다.

➂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70조제3항 또는「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3조 "로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 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 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한다.

③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비지정문화재를"을 "비지정문화유산·자연유산을"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 1.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 2.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제4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제4

호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호"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로, "같은 법 제66조"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한다.

➂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의 다목 중 "지방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 ④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부터 10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항	
1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13조	
10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27조 및 제70조의2	
10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제74조	
1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53조	

별표 연번 244부터 10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	
24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12조	존지역
24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15조 및 제43조	
24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18조 및 제45조	·산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유문화재의"를 "국유문화유산의"로 한다. 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의 다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로, "국유문화재는"을 "국유문화유산은"으로 한다.

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재 등록 신청)"을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으로, 같은 조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46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법률」"로, "제34조제3호"를 "제35조"로 한다.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중 "지정문화재인"를 "지정문화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을"로 한다.

❸ 법률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과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을"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 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u>문화재를</u>	제1조(목적) <u>문화유산을</u> -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	
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u>"문화</u>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u>"문화</u>
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	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u>유형문화재</u> : 건조물, 전적(典	1. <u>유형문화유산</u> :
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	
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	
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	
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	
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 <삭 제> 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 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 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 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
-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 하는 것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 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

3.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 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 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 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u>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u> 뛰어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 (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가기가 큰 것
-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 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 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 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② 이 법에서 "문화재교육"이 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 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 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 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 며,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 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③ 이 법에서 <u>"지정문화재"란</u>

4. 민속문화유산 :
② <u>"문화유산교육"</u> 이란
<u> 문화유산의</u>
<u>문화유산</u>
문화유산
교육의
③ "지정문화유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u>국가지정문화재</u>: 문화재청장 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u>문화재</u>
-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u>지정</u> 한 문화재
- 3. <u>문화재자료:</u> 제1호나 제2호 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u>문</u> <u>화재</u>중 시·도지사가 제70 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u>문화</u> <u>재</u>
- ④ 이 법에서 <u>"등록문화재"란</u>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다.
-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
   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 화재
-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
   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
   록한 문화재
-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이란
1. <u>국가지정문화유산</u> :
문화유산
2. <u>시·도지정문화유산</u> :
기정
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문화유
<u>산</u>
П = 1 О 1)
<u></u> 문화유산
④ <u>"등록문화유산"</u>
④ <u>"등록문화유산"</u> 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
④ <u>"등록문화유산"</u>
④ <u>"등록문화유산"</u> 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 화유산으로서
④ "등록문화유산" 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 화유산으로서 1. 국가등록문화유산:
④ <u>"등록문화유산"</u> 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 화유산으로서
④ "등록문화유산" 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 화유산으로서 1.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한 문화
① "등록문화유산" 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 화유산으로서 1.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한 문화 유산
(4) "등록문화유산" 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 화유산으로서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u>문화재로</u>지정된 경우에 해당 <u>지정문화</u>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u>지정문화재를</u>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u>문</u> <u>화재를</u>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 이란 <u>문화재 주변</u>의 자연경관 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u>문화재와</u>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 변 환경을 말한다.
- ⑧ (생략)
- ⑨ 이 법에서 <u>"국외소재문화</u> <u>재"</u>란 외국에 소재하는 <u>문화재</u>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 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u>문화재는</u> 제외한다)로서 대한 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 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 다.
- ⑩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

<u>지정문화유산</u>
의
<u>지정문화유산을</u>
⑥ 문화
<u></u>
<u>유산을</u>
<ul><li>?</li></ul>
 문화유산 주변
<u> </u>
문화유산과
⑧ (현행과 같음)
⑨ "국외소재국가유산"
<u>이란</u> <u>국가유산기본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u>국가</u>
<u>유산은</u> 제외한다)으
⑩ "문화유산지능정

화"란 문화재데이터의 생산· 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 적용· 융합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문화재데이터" 란 문화재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 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 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 의 정보를 말한다.

① 이 법에서 "문화재지능정보 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 정보기술 중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 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 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저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

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
문화유산지능정
<u>보기술을</u> 적용·융합하여 <u>문화</u>
<u>유산</u>
⑪ <u>"문화유산데이터"란</u>
문화유산지능정보화
⑫ <u>"</u> 문화유산지능정
보기술"이란
<u>문화유산의</u>
세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u>문화유산의</u>
세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문화유산

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 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 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u>문화재</u>의 보존·관 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

②
화유산
③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
④ <u>문화유산</u>
ll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u>문</u>
화유산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

수리・실측・설계・감리와 <u>매</u> 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제2장 <u>문화재</u>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기

-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
   향 및 목표
- 2. 이전의 <u>문화재</u>기본계획에관한 분석 평가
- 3. <u>문화재</u> 보수·정비 및 복원 에 관한 사항
- 4. <u>문화재의</u>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5. <u>문화재</u> 안전관리에 관한 사 항

5의2. 문화	<u>화재</u> 관련	시설	및	구
---------	--------------	----	---	---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
하여는
③・④ (현행과 같음)
제2장 <u>문화유산</u>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u></u> 문화유산의
문화유산기
본계획
1. 문화유산
2 문화유산
3. 문화유산
4. <u>문화유산의</u>
5. 문화유산
5의2. 문화유산

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 · 방역 관리에 관한 사 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 사항
-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 관 한 사항
-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 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7의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7의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 8.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 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 한 사항
- 9.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 관 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

6. 문화유산
 6의2. <u>문화유산지능정보화</u>
7. 문화유산
7의2. <u>국외소재문화유산</u>
7의3 <u>문화유산</u>
7의4. <u>문화유산교육</u>
8. <u>문화유산의</u>
 9 <u>문화유산의</u>
②
<u>계획을</u>

<u>획을</u>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 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기본계</u> 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u>문화재에</u> 대한 자료를 제출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제7조(<u>문화재</u>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u>문화재기본계획에</u> 관한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제7조의2(국회 보고) 문화재청장 은 <u>문화재기본계획</u>,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계획을
	<u>.</u>
	④
	계획을
	- <u>문화유산에</u>
제	6조의2( <u>문화유산의 연구개발</u> )
	① 문화유산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유산기본계획에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7조의2(국회 보고)
	문화유산기본계획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 한다.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문화유산의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 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문화유산위원회---.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 1. 문화유산기본게획------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2. 국가지정문화유산-----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3. 국가지정문화유산----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 제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 5.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 6. 국가지정문화유산----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 7. 국가지정문화유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8. 국가등록문화유산-----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9. 매장유산의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10.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전문	적	또는	기
술적 시	) 항으	로서	중.	요하다	}고
인정되는	는 사형	<u></u>			

- 11. 그 밖에 <u>문화재의</u>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사항
- ② <u>문화재위원회</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u>문화재</u>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
- 2. <u>문화재</u>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 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

11 문화유산의
② 문화유산위원회
1
- 문화유산
2. 문화유산
3
문화유
<u>산</u>
③

여 <u>문화재</u> 종류별로 업무를 나 -- <u>문화유산</u> 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u>문화재위원회</u>에 분과위원회를 <u>원회</u>-------둘 수 있다.

- ④ (생략)
-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 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 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심의 한 사항은 <u>문화재위원회</u>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 ⑥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 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⑦ (생 략)
- ⑧ <u>문화재위원회</u>,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 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u>문화재위원회에는</u> 문화재청 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의 명을 받아 <u>문화재위원회의</u>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

<u>七와市心</u>
문화유산위
원회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유산위원회
⑥ 문화유산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문화유산위원회
⑨ 문화유산위원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u>문화재위원회</u> 위원 및 전문 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 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 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활동 지원 및 진흥
-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 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 발·활용
-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 른 매장문화재 발굴

⑩ 문화유산위원회
 <u>&lt;</u> 삭 제>

-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

   설 등의 운영
-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 제교류
-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 현
-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 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 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u>지정문화재가</u> 아닌 <u>문화재에</u> 대하여 조사를 할 경 우에는 해당 <u>문화재의</u>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한다.
  - ④ <u>문화재</u> 조사의 구체적인 절 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3장 <u>문화유산</u>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 ①
	- <u>문화유</u>
산의	
<u>문화유산의</u>	
②	· 
문화유산의	
<u> </u>	
③	
지정문화유산여	<u> </u>
문화유산에	
문화유산의	일
· ④ <u>문화유산</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 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 ----- 문화유산---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문화유산---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 -----문화유산정보체계를---보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 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2)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유산정보체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 연 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 ④ -----문화유산정보 계의 구축 범위 · 운영절차 및 체계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u>문화재</u>
<u>가</u>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
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
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
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u>지정문</u> <u>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u> <u>무형문화재를</u>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 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 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 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u>지정</u>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 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보호)	<u></u> 문화
유산이	
<u></u> 문화유산의	
,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u>지정문화</u>
<u>유산</u>	-문화유산을
②	
	<u>지정문</u>
<u>화유산의</u>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u>지정문화재의</u>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u>지정문화재의</u> 역 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 에 <u>문화재</u>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 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 만, <u>문화재의</u> 특성 및 입지여 건 등으로 인하여 <u>지정문화재</u> 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 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 우에 해당 공사가 <u>문화재에</u> 영 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 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

<u>지정문화유산의</u>
③
<u>지정문화유산의</u>
문화유산
<u>문화유산의</u>
지정문화유산의
문화유산에

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 도지사는 <u>지정문화재의</u>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 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 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u>지정문화재의</u>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 ⑧ (생 략)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저 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문화 재청장과 시·도지사는 <u>지정문</u> <u>화재</u> 및 <u>등록문화재의</u>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한다.

<u>.</u>
4
<u>지정문화유산의</u>
5
문화유산을
<u>지정문화유산의</u>
<u>.</u>
⑥ ~ ⑧ (현행과 같음)
세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지정문
<u>화유산등록문화유산의</u>

-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문화재</u>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u>문화재</u>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문화재</u>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u>지정문화재</u> 및 등록 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u>문화재의</u>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증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 치 등) ① <u>지정문화재의</u> 소유

②
<u>문화유산</u>
문화
<u>유산</u>
③
<u>문화유산</u>
 )147시아된 레드 레스테트시 리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
면 등) ①
<u>지정문화유산</u> <u>등록</u>
<u>문화유산의</u>
②
<u>문화유산의</u>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
치 등) ① 지정문화유산의

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u>지</u>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u>지정문화재의</u> 도난방지를 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지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지정할 수 있다.

<u> 정문화유산의</u>
지정문화유산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
산과
<u>U</u> F
<u> </u>
<u>전</u> <u>지</u> <u>정문화유산등</u>
 <u>지</u> 정문화유산등
 <u>স</u>
 <u>지</u> 정문화유산등
 <u>지</u> 정문화유산등
 <u>지</u> 정문화유산등
 <u>지</u> 정문화유산등

② 지정문화재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 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 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문화재</u> 보호 관련 기관및 단체
-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저
  - ① 문화재청장은 화재등 <u>문화</u>재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2 <u>지정문화유산등의</u>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1. ~ 3. (현행과 같음)
4
<u>문화유산</u>
세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u>문화</u>
<u>유산</u>

대응하기 위하여 <u>문화재</u>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 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문화재청장은 구축된 정보 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15조(<u>문화재보호활동의</u>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를</u> 보호·보존·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
  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
  재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u>문화재</u>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의</u>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u> 문화유산</u>
·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문화유산보	
등)	<u>문화유산을</u>
제15조의2(문화유	산매매업자 교
	 문화유산매매
	문화유산매
<u>매업자가</u>	
<u>문화유산</u>	
	<b></b>
제16조( <u>문화유산</u>	전문인력의 양
성) ①	<u></u> 문화유산
<u>ol</u>	
② ~ ⑥ (현행:	과 같음)
<박 제>	, , ,
<b>~</b> 何 <i>仙</i> /	

촉진 등) ① 국가는 문화재 관 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 동조사 · 연구 등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 <삭 제>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문 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 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 · 연구하여야 한 다.

③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 ·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 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 <삭 제> 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 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 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 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 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 다.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 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 재를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 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 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 여 유지 ·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 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 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 <삭 제>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 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 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 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 정 · 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 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 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 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 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 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 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 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 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 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 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 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u>시</u>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테21소(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①
문화유산의
<u>국유문화유산과</u>
<u>지정문화유산</u>
임시지정문화유산을
<u>문화유산의</u>
문화유산을
②
<u>\lambda</u>
문화유산

- 0	4 -
③ (생 략)	③ (현행과
제22조(지원 요청) (생 략)	제22조(현행과
제22조의2( <u>문화재교육의</u> 진흥을	제22조의2(문화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	을 위한 정
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	
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1.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1. 문화유산
기반 구축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	2. 문화유산
육자료의 개발・보급	
3.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	3. <u>문화유산</u>
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에 대한 <u>문화재</u>	
교육의 지원	육의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	5. <u>문화유산</u>
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u>문화재교육</u> 진흥을	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원 요청) (생 략)	제22조(현행과 같음)
제22조의2( <u>문화재교육의</u> 진흥을	제22조의2( <u>문화유산교육의</u> 진흥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	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	문화유산교육의
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u>.</u>
1.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1. 문화유산교육의
기반 구축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	2. 문화유산교육
육자료의 개발·보급	
3.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	3. 문화유산교육
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에 대한 <u>문화재</u>	문화유산교
교육의 지원	육의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	5. <u>문화유산교육</u>
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u>문화재교육</u> 진흥을	6 <u>문화유산교육</u>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3( <u>문화재교육의</u> 실태조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
사) ①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교</u>	조사) ① <u>문화유</u>
<u>육</u>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산교육
위하여 <u>문화재교육</u> 현황 등에	문화유산교육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 ② (생략)

-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교육지원센 턴(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역 <u>문화재교육</u> 인력의 연 수 및 활용
  - 2. 지역 실정에 맞는 <u>문화재교</u>
     육 프로그램 및 <u>문화재교육</u>
     교재의 개발과 운영
  - 3. 지역 <u>문화재교육</u>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 5. 지역 <u>문화재교육을</u>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위탁하는 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u>의</u> 지정 등) ①
<u></u> 문화유산교육을
문화유산교육을
문화유산교육을
문화유산교육
지원센터
②
1 <u>문화유산교육</u>
2문화유산
교육문화유산교
숔
 3문화유산교육
1
4
<u>문화유산교육</u>
5 <u>문화유산교육을</u>

6.	ユ	밖에	지역	실정	에	맞는	-
	문화	재교육	무을	하기	위	하여	
	필요	한 사	업				

- ③ (생략)
- ④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재교육</u> 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⑥ (생 략)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문화재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6
문화유산교육을
③ (현행과 같음)
4
문화유산교
<u>육에</u>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문화유산에
문화유
산교육
문화유산교육
② <del>-</del>
화유산교육의
<b>-</b> _
·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 · · · · · · · · · · · · · · · · · ·
<u>화유산교육의</u>

- 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 · 보급할 수 있다. ②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 · 운영하는 자는 문화재청장 에게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재교육 프 로그램이 교육내용 ·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 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 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 시를 할 수 있다.
-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 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 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그 밖에 문화재교육 프로그 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u>문화유산교육</u>
 ② <u>문화유산교육</u>
<u>문화유산교육</u>
③
<u>문화유산교육</u>
① (현행과 같음) ⑤
<u>.</u>
6
<u>문화유산교육</u> -

제22조의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 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 다.

#### 1. • 2. (생략)

- 제22조의8(<u>지정문화재</u> 등의 기증의 ① <u>지정문화재</u> 및 <u>등록문화재의</u>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u>문화재를</u> 기증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 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 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제22조의7( <u>문화유산교육</u> 프로그	
램 인증의 취소)	
<u></u> 문화유산교육	
	-
1. • 2. (현행과 같음)	
제22조의8( <u>지정문화유산</u> 등의 기	
증) ① <u>지정문화유산등록</u> 문	
<u>화유산의</u>	
<u></u> 문화유산을	
<u>.</u>	
②	
- <u>문화유산을</u>	
문화유	
산수증심의위원회의	-
③ 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	
<u>산의</u> 문화유	
<u>산의</u>	
문화유산수증	
심의위원회를문화유산수	
증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 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 런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3장의2 <u>문화재지능정보화</u> 기반 구축

-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 저 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u>문화재의</u>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 여 <u>문화재지능정보화</u>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u>문화재지능정</u>
     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4	-
-문화유산의	-
	-
	-
<u>.</u>	
(5)	-
	-
, 문화유산 관	_
,	_
<u> 련</u>	
⑥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u></u> 문화유산의 -	-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
② 문화유산지능	-
정보화	-

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자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u>문화재데이터</u>의 생산·수집· 저장·가공·분석·제공및 활용
- 문화재데이터의 이용 활성
   화 및 유통체계 구축
- 문화재데이터에 관한 기술
   개발의 추진
- 4. <u>문화재데이터</u>의 표준화 및품질제고
- 5. 그 밖에 <u>문화재데이터</u>의 생산 · 수집 · 분석 · 유통 · 활용등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u>문화재데이터</u>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 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b>.</b>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u>문화</u>
<u>유산지능정보화</u>
1. <u>문화유산데이터</u>
2. 문화유산데이터
3. <u>문화유산데이터</u>
4. <u>문화유산데이터</u>
5 문화유산데이터
②
<u>문화유산데이터</u>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데이터</u>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 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④ (생략)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표준
   화
- 3. <u>문화재지능정보기술</u>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분석 ·가공
- 4. <u>문화재지능정보기술</u>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5. 그 밖에 문화재지능정보기

③ 문화유산데이
<u>E]</u>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
<u>술</u> 의 개발 등) ①
 문화유산지능정보화
<u>.</u>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5 문화유산지능정보기

<u>술</u>의 개발·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지능정</u>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u>문화재지능정보기술을</u>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③ (생략)

-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 스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문 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재지능 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운 영하여야 한다.
  - 문화재데이터 및 메타데이
     터의 체계적인 관리
  - 2. <u>문화재지능정보기술</u>의 개발·관리·활용 등
  - 3. <u>문화재데이터</u> 및 메타데이 터의 분석 등을 통한 <u>문화재</u>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정 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

<u>室</u>
② 문화유산지능
<u>정보기술의</u>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
<u>비스플랫폼</u> 의 구축·운영) ①
문화유산지능정보
ই}
문화유산지능정
보서비스플랫폼
1. 문화유산데이터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3. 문화유산데이터
 문화유산
<u> </u>

면 산업 지원, <u>문화재 활용</u> ----- <u>문화유산 활용</u> -----활성화 지원 등 -----

4. (생략)

- ② ~ ④ (생 략)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u>유형문화재</u> 중 중 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u>문화재 중</u>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u>문화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 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삭제

-	
4. (현행고	구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4장 ]	국가지정문화유산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유산위원회
	유형문화유산
②	
	- - 문화유산 중
	문화유
산위원회-	
③ (현행고	
<삭 제>	-

<u>④ 삭제</u>	
⑤ 삭제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제25조 <u>(사적의</u> 지정) ①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u>	문화유산
<u>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위원회
중 중요한 것을 <u>사적, 명승 또</u>	<u>사적으</u>
<u>는 천연기념물</u> 로 지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u>사적, 명승,</u>	② <u>사적</u>
<u>천연기념물</u> 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6조( <u>국가민속문화재</u> 지정) ①	제26조( <u>국가민속문화유산</u>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①문화유산위원
심의를 거쳐 <u>민속문화재</u> 중 중	회의민속문화유산
요한 것을 <u>국가민속문화재로</u>	
지정할 수 있다.	<u>유산으로</u>
② 제1항에 따른 <u>국가민속문화</u>	②국가민속문화
<u>재의</u>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	유산의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	지정) ①
•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 보호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

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 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 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 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 할 수 있다.
- 해당 <u>문화재의</u> 보존가치
   ·3. (생 략)
- ④ (생 략)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저 문화재청장이 제23조, 제25조 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u>문화유산의</u>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세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u>문화재</u>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 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 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u>국가민</u> 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 자에게 해당 <u>문화재의</u> 지정서 를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
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
다.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 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u>문화재</u> <u>가 국가지정문화재</u>로서의 가치 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 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u>문화재위원회</u>의 심 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u>.</u>
② 문화유산-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국가민속문화유
<u>산을</u>
<u>문화유산의</u>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
<u></u> 문화유
<u>산</u>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u>문화유산이 국</u>
<u>가지정문화유산으</u>
문화유산위원회

수 있다. ② • ③ 삭 제 ④ 문화재청장은 제27조제3항 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 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 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 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 -----. 국가지정문화유산 --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문 ⑤ ----- 문화 화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유산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 ⑥ ----- 국가민속문화 문화재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 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 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 <u>문화유산 지정서</u>---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 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다. 제32조(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 제32조(임시지정) ① ------

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 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u>문화재가</u> 지 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 한 필요가 있고 <u>문화재위원회</u> 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u>중요문화재</u>로 임시지정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u>문화재(이</u> <u>하 "임시지정문화재"</u>라 한다) 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 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 다.
- ③ ④ (생 략)
-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u>국가지정문화재</u>의 소유자는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u>문화재를</u>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 ② <u>국가지정문화재</u>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u>문화재를</u> 관리·보호할 관리자 를 선임할 수 있다.
-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

<u>문화유산이</u>
<u>문화유산위원회</u> 중
요문화유산 <u>으</u>
②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
<u>가지정문화유산</u> 문
화유산을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을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지정무화유산

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 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 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 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 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 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 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 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 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 여 그 <u>문화재를</u> 관리하기에 적 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u>문화재의</u>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
화유산
<u>문화유산을</u>
<u>국가지정문화유산</u> -
산의
문화유산
<u>o</u> ]
②
<b>2</b>
- 문화유산을
- <u>단위표건들</u> 문화유산
이 <u>도착개고</u>
<u>-1</u>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u>문화재의</u>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 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 고, <u>국가지정문화재</u>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 에 이를 알려야 한다.
- ⑤ (생략)
- ⑥ 관리단체가 <u>국가지정문화재</u>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생략)
-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 저리) ① 문화재청장은 <u>국가지정</u> 문화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관리자

③
- <u>문화유산의</u>
<u>.</u>
<b>(4)</b>
<u></u>
국가
<u> </u>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지정문화유
<u>산을</u>
⑦ (현행과 같음)
세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u>국가지정문화</u>
<u>유산</u>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면 <u>문화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해당 <u>문화재를</u> 특 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u>국가지정문화</u>
 <u>재</u>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 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 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 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

문화유산위원회
- <u>문화유산을</u>
② <u>국가지정문화</u>
<u>유산</u>
제35조(허가사항) ① <u>국가지정문</u> <u>화유산</u>
그리키기묘취 6 제
<u>국가지정문화유산</u>

다.

-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u>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u> 는 <u>문화재는</u> 제외한다)의 보 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u>국가지정문화재를</u> 탁본 또 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 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 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1. <u>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u> 보호구역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
하는 문화유산은
3. <u>국가지정문화유산을</u>
<u>&lt;삭 제&gt;</u>

-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 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 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 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u>국가지정문화재</u>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제36조(허가기준) ①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대상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도
<u> 지정문화유산</u>
③
<u>국가지정문화유산</u>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허가기준) ①
•
1 무화유사

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2. <u>문화재</u>의 역사문화환경을훼손하지 아니할 것
- 3. <u>문화재기본계획</u>과 시행계획 에 들어맞을 것
- ② (생략)
-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 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 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 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 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

2. 문화유산
3. 문화유산기본계획
② (현행과 같음)

고 있는 동물병원

-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 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 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 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 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 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 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 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 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

- 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⑤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 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경우
- 5. 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⑥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5 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

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저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 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u>문화재</u>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 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 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 작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에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u> </u>
문화유
· <u>논구개</u> 산의
②문화유
산의
3
<u>T</u>
화유산의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 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생략)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 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 ·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삭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 · 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 념물의 경우
- ⑦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 <삭 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
④ (현행과 같음)
5
<u>문화유산의</u>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문화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u>국가지정</u> 전 <u>문화재(보호물과</u>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u>문화재에</u>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

<삭 제>

제40조(신고 사항) ① <u>국가지정</u>
문화유산
<u>문화유산에</u>
,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1. (생략)
-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 (생략)
-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5. (생략)
-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 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 시 반입한 경우
-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 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 <삭 제> 을 부검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국가지정문화유산
3. (현행과 같음)
4. 국가지정문화유산
5. (현행과 같음)
6. 국가지정문화유산
7
문화유산
8
문화
유산을
<u>॥ 납ㄹ</u>
<u>&lt;</u> 삭 제>

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 | <삭 제> 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u>경우</u>

②·③ (생 략)

제41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 <삭 제>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 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 제42조(행정명령) ①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 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 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 ·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 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 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②·③ (현행과 같음)

<u>국</u>
가지정문화유산
1. 국가지정문화유산
<u></u>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 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 지나 제한

- 2. <u>국가지정문화재</u>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 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 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 3. 국가지정<u>문화재</u>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 한 <u>문화재</u> 보존에 필요한 긴 급한 조치
-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국가</u>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 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u>국가지정문화재</u>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 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2. <u>국가지정문화유산</u>
3문화유산
문화유산
4
4국가지정
 문화유산
2
<u>국가지정문화유산</u>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 다.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 재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 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 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 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 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③・④ (현행과 길	<b>날음</b> )
제	] 43조(기록의 작성	• 보존) ① -
	국가지정문화유산	·
		- 
		_
		•
	②	구기기저므히
	②	
	<u> 유산의</u>	
	<u>유산의</u> 문	화유산에
	유산의	화유산에 정문화유산의-
	유산의 문 국가지	화유산에 장유산에  정문화유산의- 
제	유산의	화유산에 장유산에  정문화유산의- 
제	유산의 문 국가지	화유산에 정문화유산의-  ①
제	유산의	화유산에 정문화유산의-  ① 유산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u>국가</u> <u>지정문화재</u>에 대하여 재조사하 게 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⑥ (생 략)
-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u>국가지정</u> 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u>국가지정문</u>
화유산
③ (현행과 같음)
4
문화유산
<u></u> 문화유산
<u>문화유산</u>
⑤·⑥ (현행과 같음)
7
<u>국가지정</u>
문화유산
1. 문화유산

- 2. (생략)
- 3. 삭 제
-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 5. <u>문화재</u>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 치·제거 및 이전
- 6. (생략)
-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u>국가지</u>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47조(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 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 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 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 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0 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 제48조<u>(국가지정문화재의</u> 공개 등) ① <u>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u> 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2. (현행과 같음)
4. <u>문화유산</u> 5. <u>문화유산</u>
<u>국가지</u> <u>정문화유산</u>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u>문화재의</u> 공개를 제한하 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u>국가지정문화</u> 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u>문화재의</u>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u>문화재의</u>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 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

<u>문화유산의</u>
②
<u>산</u>
<u></u> 문화유산의
<u>문화유산의</u>
③
국가지정문화유산
 <u>문화유산이</u>
<u></u> 문화유산의
<b>4</b>

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 ⑦ (생 략)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① <u>국가지정문화재</u>의 소유자는 그 <u>문화재를</u> 공개하는 경우 관 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 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 수권자가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 당 <u>국가지정문화재</u>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u>국가지정문화재의</u> 경우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u>국가지정문화재의</u>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

문화유산의
<u> </u>
<u>.</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을
2
국가지정문화유산
· ③
③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u> </u>
,

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체가 그 <u>문화재를</u>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 2. (생략)
-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u>국가지정문화재</u>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u>문화재의</u>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 ③ (생략)

<b>4</b>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지정문
화유산
제51조(보조금) ①
, 1
1
<u>문화유산을</u>
2. (현행과 같음)
3
②
<u>의</u>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u>국가지정문화재</u>로서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u>문화재에</u>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u>국가등록문화재</u>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 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 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 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u>국가등록</u>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u>국가등록문화재의</u> 등록기 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u>국가등록문화재의</u>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u>국가등록문화</u> <u>재를</u> 관리하는 자는 <u>국가등록</u>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
담)
국가지정문화유산으-
<u>문화유산에</u>
·.
제5장 국가등록문화유산
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문화유산위원회
<u>지정문화유산이 아</u>
<u>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u>
속유산
<u>국가등록문화유산</u>
<u>0</u>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레드4코(고리 드린 미윈 O 시 이 - 코리)
제54조 <u>(국가등록문화유산의</u> 관리)
① <u>국가등록문화유산의</u>
<u>국가등록문화유산을</u>
<u>국가등록문화유산</u> 의
<u>–1</u>

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u>국가등록문화</u> 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국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u>국가등록문화재의</u>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 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 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u>국가</u>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저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 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 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②국가등록문화유
<u>산의</u>
<u>국가등</u>
록문화유산을
<u>그</u> 문화유
산을
<u>해당 국가등록</u>
문화유산을
<u>.</u>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
체"
국가등록문
화유산의 관리
<u> </u>
•
세5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가등록문화
유산관리단체는문화유산에-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하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u>문화재</u>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u>문화재를</u>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 정)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u>해당 문화재(</u>동산에 속하는 <u>문화재는</u> 제외한다)의 외관을

1. ~ 6. (현행과 같음)
7
- 문화유산
8
·
- 문화유산을
- 世界市位宣
NEC고(그리드라면취 O 차이 취차
에56조( <u>국가등록문화유산의</u> 현상
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1. 해당 문화유산
문화유산은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해당 <u>문화재(동산에 속하는</u> <u>문화재는 제외한다)를</u>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3. 동산에 속하는 <u>문화재를</u> 수 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국가등록문화재</u>의 현상을 변경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 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 례적용을 받은 <u>국가등록문화</u> <u>재</u>
-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u>국가등록</u>
   문화재
- 3. <u>국가등록문화재의</u>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2 <u>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u>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3 <u>문화유산을</u>
2
<u>국가등록문화유산</u>
1
<u>국가등록문화유산</u> 2
2. 
<u>유산</u> 3. <u>국가등록문화유산의</u>
국가등록문화유산

- ③ (생략)
- ④ 문화재청장은 <u>국가등록문화</u> 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u>국가등록</u> 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수있다.
-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 청장은 <u>국가등록문화재</u>에 대하 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 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 으면 <u>문화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 다.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가등록문화</u>
<u>유산의</u>
<u>국가등</u>
록문화유산의
,
제5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
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u>국가</u>
등록문화유산인
·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위원회

- ② <u>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u> <u>재</u>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 을 상실한다.
- ③ <u>국가등록문화재</u>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u>문화재의 등록</u> <u>증</u>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
- 제59조(준용 규정) ① <u>국가등록</u> 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 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 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 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 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 는 "등록증"으로 본다.
  - 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 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
화유산으
③ 국가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등록증
제59조(준용 규정) ① <u>국가등록문</u>
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가등
록문화유산"으로
<u>"</u> 문화유산의
② 국가등록문화유산
<u>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u>
<u>에국가등록문화유산</u>
<u>ol</u>
<u>국가등록문화유산에</u>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 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 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 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 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 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 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 • 제 3호 및 제2항 · 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제6장 <u>일반동산문화재</u> 수출 등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 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u>아니한 문화 재</u>중 동산에 속하는 <u>문화재</u>(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u>일반</u>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u>"</u> 국가지정문
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
<u>으로"국가등록문화</u>
유산관리단체"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ll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u>아니한 문화</u>
<u>유산</u> 문화유산(이
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
<u>일반동산문화유</u>
<u>산</u>

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u>일</u> 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 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 는 경우
-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 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 ② (생략)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u>일반동</u> 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반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 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

1
일 반
<u> </u>
<u> 6 년 년 위계 년 일</u>
2
<u>문화유산 관련</u>
일반동산문
화유산을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동산
문화유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 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 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u>일</u> 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 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
   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
   출・수출 및 반출・수출 기간

 ⑤ 일반동산문화유산으
⑥ <u>일반</u>
<u>동산문화유산</u>
⑦
<u>문화유산의</u>
·.
8
일반동산문화유산

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 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⑨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수출을 허가 받은 자에게 해당 <u>문화재의</u>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 재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문화재감정위</u>원의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
	-
<b></b> .	
9	
	-
문화유산의 <u></u>	-
	-
	-
	-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_
배치 등) ①문화	-
유산의	-
	-
	-
	-
	-
	-
문화유	-
<u> </u>	-
<u> </u>	
② 문화유산감정	
위원	-
<u> 11 t:</u>	
제61조 <u>(일반동산문화유산에</u> 관한	-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u>문화재의</u> 보존·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u>문화재에</u> 관한 보존·관리 방 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
-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u>문화</u> 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7장 <u>국유문화재에</u> 관한 특례 | 제7장 <u>국유문화유산에</u> 관한 특례

조사) ①
<u>일반</u>
동산문화유산
②
<u>문화유산의</u>
<u>문화유산에</u>
<u>.</u>
②
<u></u>
문화유산
에
_ <del>''</del>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
유에 속하는 문	화재(이하 "국
유문화재"라 한	다)는 「국유재
산법」 제8조의	가 「물품관리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
재청장이 관리	• 총괄한다. 다
만, 국유문화재	<u>가</u>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의 장(「국가재
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관
리하고 있는 혀	행정재산(行政財
産)인 경우 또	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리 장이 관리하
여야 할 특별한	<u> 필</u> 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이	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① 므치게처자 ○	- 계1하 다시에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u>문</u>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u>국유문화재</u> 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 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문화유산(이하 "국유
<u>문화유산"이</u>
국
유문화유산이
②
<u>국</u>
<u> 가유산위원회</u>
<u>.</u>
③
국유문화유산
<u> , a , , , a</u>

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u>국유문화재</u> 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 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 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 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 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u>국유문화재를 국가지 정문화재</u>로 지정 또는 임시지 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 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u>문화재의</u>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u>문화재의</u> 관리청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u>국</u> 유문화재에 관하여 제40조·제

<u>국유문화유산</u>
·.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유산을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지정문화유산으
<u></u> 문화유산의
<u>국</u>
<u>유문화유산의</u>
②
국유문
화유산

42조·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u>문화재의</u> 소유자란 그 <u>문화재의</u> 관리청을 말한다.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 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u>국가지정문화재</u> 또는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u>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u>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u>국외소재문화재</u>의 보호
• 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 다.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실태, 반출경위 등에 관하여조사·연구를실시할수있다.

## ② (생략)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문화재청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문 화재청장은 <u>국외소재문화재</u> 환 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 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제68조 <u>(국외소재국가유산의</u> 조사 •연구) ①
<u>산</u>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국외소재국가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국외소재국가유산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국외소재국가유산 환
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외소재국가
유산
<b></b>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 재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국외문화재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u>국외문화재재단에</u> 관하여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국가는 <u>국외문화재재단의</u>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u>「문</u> <u>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u> <u>재보호기금에서</u> 출연 또는 보 조할 수 있다.
- ⑥ 국외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

의 설립) ① 국외소재국가유산
<u>국외소재국가유산</u>
국외소재국가유산
과
<u>–––––––––––––––––––––––––––––––––––––</u>
국외소재문화유
산재단"국외문화유산재
단"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5국외문화유산재단의-
<u> </u>
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
가유산보호기금에서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u>국외소재문화재의</u> 현황, 반 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 구
- 2. <u>국외소재문화재</u> 환수 및 보 호·활용에 관한 연구
- 3. <u>국외소재문화재의</u> 취득 및 보전·관리
- 4. <u>국외소재문화재의</u>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 5. <u>국외소재문화재</u> 환수 및 활 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 6. 7. (생략)
- 8. <u>국외소재문화재의</u>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 9. <u>국외문화재재단의</u>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10. 그 밖에 <u>국외문화재재단의</u>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⑦ 국외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

1. 국외소재국가유산의
2. 국외소재국가유산
3. 국외소재국가유산의
4. 국외소재국가유산의
5. <u>국외소재국가유산</u>
6.•7. (현행과 같음)
8. 국외소재국가유산의
9. 국외문화유산재단의
<b>–</b>
10국외문화유산재단
의
<u>~1</u>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 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지하는 무구든지 <u>국외소재문화재</u>의 환수·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u>국외문화재재단</u>에기부할 수 있다.
  -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재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u>국외문화재재단</u>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u>국외소재국가유산</u>
<u>국외문화유산재단</u>
② <u>국외문화유산재단</u>
<u>국외문화유산재단</u>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외문화유산재단</u>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u>국외소재문화재</u>의 환수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9장 <u>시·도지정문화재</u> 및 <u>시·</u> 도등록문화재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 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u>아니한 문화재</u> 중 향 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것을 <u>문화재자료</u>로 지정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에 있는 <u>문화재로서 지정문화</u> <u>재로</u>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u>국</u> <u>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u>

⑤
국외소재국가유산
제9장 <u>시·도지정문화유산</u> 및 <u>시</u>
• 도등록문화유산
제70조( <u>시·도지정문화유산</u> 의 지
정 및 <u>시·도등록문화유산</u> 의
등록 등) ①
<u></u>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u></u> 문화유산 중
<u>시·도지</u>
정문화유산으로
②
<u>아니한 문화유산</u>
<u>문화유산자료</u>
③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
<u>산으로</u> <u>국가등록</u>
문화유산으유형

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 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 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 요한 것을 <u>시·도등록문화재</u>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 ·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하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u>시·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

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
유산
<u>시</u> ·도등록문화유
<u>산</u>
④ <u>문화유산위원</u>
<u> </u>
문화유산에
<u>시·도지정문화유산이</u>
나 문화유산자료
<u>\]</u>
·도등록문화유산으
문화유산 지정절차
5
<u>시</u>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 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 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 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 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재 또 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
<u>유산자료 시ㆍ</u>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u>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u>
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
<u>산</u>
<u>.</u>
제70조의2 <u>(시·도지정문화유산</u>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유산
② (현행과 같음)
3

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1. 해당 <u>문화재</u>의 보존가치 2.·3. (생 략)
- ④ (생 략)
-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 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 사는 <u>시·도지정문화재</u>의 보존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 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 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 할 수 있다.
-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 저 <u>치)</u>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에 있는 <u>문화재의</u> 보존·관리 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1 <u>문화유산</u>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정문화유산
<u>시·도지정문화유산</u>
<u>시·도지정문화유산</u>
시·도지정문화유산

심의하기 위하여 <u>시·도에 문</u> <u>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u> 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 2. ~ 4. (생략)
-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 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 가등록문화재 등록 또는 말소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 저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도지 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

<u>시·도에 문화유산</u>
<u>위원회"시·도문화유산위</u>
원회"
② <u>시·도문화유산위원회</u>
·.
1. 문화유산
2. ~ 4. (현행과 같음)
③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
화유산
<u>국가등</u>
록문화유산
<u>\lambda</u>
도문화유산위원회
<u>.</u>
세72조(경비부담) ①
<u>시·도지정문</u>
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
·도등록문화유산이

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 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 · 도등록문화재의 보존 · 관 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 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3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 1. 시 ·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을 해제한 경우
  - 2. 시 ·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 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 3. 시 ·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 된 경우
  - 4.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 4.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 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

<u>.</u>
②
<u>시 • 도지정</u>
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
<u>·도등록문화유산</u>
제73조(보고 등) ①
1.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
화유산자료
2. <u>시·도등록문화유산으</u>
3.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

- 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 유산----
  - 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 유산-----

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생 략)

- 제74조(준용규정) ① <u>시·도지정</u> 저 <u>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u> <u>등록문화재</u>의 수출 또는 반출 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 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 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 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 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③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 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 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 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

② (현행과 같음)
세74조(준용규정) ① <u>시·도지정</u>
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
•도등록문화유산
②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
유산자료
③ 시·도등록문화유산

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 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 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 ·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 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 화재위원회"는 각각 "시·도문 화재위원회"로 본다.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u>유형</u>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u>문화재매매</u>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u>"문화재매매업자"</u>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u>.</u>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4 7 9 7 4 4 1 1
<u>유형</u> 문화유산이나
<u>유형문화유산이나</u>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을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을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을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을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을 

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재의</u> 보존 상 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u>문화재매매업</u>의 허 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 경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 조조에 따라 <u>문화재매매업의</u> 허가를 받은 자가 <u>문화재매매업</u>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u></u> 문화유산의
③ (현행과 같음)
4
1. ~ 3. (현행과 같음)
4
<u>문화유산매매업</u>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u>문화유산매매업의</u>
<u>문화유산매매업을</u>

설립되는 법인은 <u>문화재매매업</u> 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문화재매매업</u> <u>자</u>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 항에 따라 <u>문화재매매업</u>의 허 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 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
  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
  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②문화유산매매업
<u> 자</u>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자격 요건) ①
<u>문화유산매매업</u>
1
<u>문</u>
<u>화유산을</u>
2
ㅁ늬 ᄼ ᆡ ᅴ ᅴᅱ
- <u>문화유산관리학</u>
<u>"문화유산</u>

무하유사매매언자-----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라 <u>문화재</u>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
- 4. <u>문화재매매업자</u>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u>문화재를</u> 취급한 자
- 5. (생략)
- ② (생략)
-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문</u> 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 1. 삭 제
  - 2. · 3. (생략)
-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u>문화재매매업자</u>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
  하여 <u>문화재매매업을</u> 하게 하
  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준수 사항) ①문화재매매 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

	3	
	<u>_</u>	<u> '화유산</u> -
	4. 문화유산매매업자	
	문화유산 <u></u>	<u>)</u> 크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77조(결격사유)	
		<u> </u>
	화유산매매업자	
	0 0 (처체코 가이)	
	2.·3. (현행과 같음)  77조의2(명의대여 등의	의 금지)
·	문화유산매매업자	
	문화유산매매업을-	
제	78조(준수 사항) ① <u>문</u>	
	<u>매업자</u>	
		문

당 <u>문화재를</u>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 아야 한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 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u>문화</u> 재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 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u>문화재</u> <u>매매업자</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u>화유산을</u>		
② 문화유산매매업자		
문화		
유산매매업		
<u> </u>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문화유산매매업		
<u>.</u>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문화유산매매		
업자		
<del></del>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 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90조·제92조 및 <u>「매장</u>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 우
- 3. (생략)
-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u>문화재매매업을</u>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6. (생략)
- ② (생 략)
-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저 승계)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 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

1. (현행과 같음)         2 「매장유산 보         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u>문화유산매매업자가</u>

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 재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 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 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 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 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 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장의2 <u>문화재의</u>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 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문화유산매매
업자에게
제10장의2 <u>문화유산의</u> 상시적
예방관리
세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문
화유산의
"문화유산돌봄
사업"

-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
   1. 지정문화유신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2. 등록문화재
- 3. 임시지정문화재
- 4.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u>문화재</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u>문화재</u>의 주기적인 모니터 링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 · 예방적 관리
- 3. <u>문화재</u>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4. <u>문화재</u>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5.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u> <u>률」</u>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u>문화재의</u>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 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u>1. 시성문화유산</u>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② <u>문화유산돌봄사업</u>
1. <u>문화유산</u> 2. <u>문화유산</u>
3. <u>문화유산</u>  4. <u>문화유산</u>
 5.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u> <u>법률」</u> <u>문화유산의</u>
- 6문화유산돌봄사업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u>문화재</u> <u>돌봄사업</u>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 른 <u>중앙문화재돌봄센터</u>와 제80 조의5에 따른 <u>지역문화재돌봄</u> 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 ① 문화재청장은 <u>문화재돌봄사</u> 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u>중앙문화재돌봄</u>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1. <u>문화재돌봄사업</u>의 관리 및 지원
- 2. <u>문화재돌봄사업</u>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3. <u>문화재돌봄사업</u>을 위한 정 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 <u>지역문화재돌봄센터</u> 평가의 지원
- 5. <u>지역문화재돌봄센터</u> 종사자 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 지원
- 6. <u>지역문화재돌봄센터</u>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3	문화유산돌
<u>봄</u>	사업
<u>중</u>	강문화유산돌봄센터
	<u>지역문화유산돌봄센</u>
	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1)	문화유산돌봄사업-
	즈아마취 이 사도 보 게디
	- <u>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u>
	· 문화유산돌봄사업
2.	문화유산돌봄사업
3.	문화유산돌봄사업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_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_	
-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_	

- 7. 그 밖에 <u>중앙문화재돌봄센</u><u>터</u>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u>중앙문화재돌봄센</u>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u>문화재 관련</u> 기관 또는 단체를 <u>지역문화재돌봄센터</u>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역여건에 적합한 <u>문화재</u>
     <u>돌봄사업</u>
  -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

7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②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문화유산 관련
③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u> 문화유산 관련</u>
,
④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u></u> 문화유산 관련
<u>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u>
1문화유산돌
<u>봄사업</u>
2문화유산돌

<u>돌봄사업</u>을 위한 연구 및 조 <u>봄사업</u>-----사

- 3. <u>지역문화재돌봄센터</u>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 류
- 4. <u>지역문화재돌봄센터</u>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 5. 그 밖에 <u>지역문화재돌봄센</u><u>터</u>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시·도지사는 <u>지역문화재돌</u> <u>봄센터</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③ ④ (생 략)
-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문화재청장은 <u>지</u> 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 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 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u> н н н</u>
3. <u>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u>
4. <u>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u>
- 5 <u>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u> 
 ② <u>지역유산돌봄센</u> <u>터</u>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의 평가 등) ① <u>지역문</u> 화유산돌봄센터
②·③ (현행과 같음)

-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실 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 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u>문화재</u>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8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 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생략)
-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u>문</u>	<u>문화유산의</u>
<u>화재의</u>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	
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b>.</b>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u>&lt;삭 제&gt;</u>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	
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u>다.</u>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지 <u>지정문화재</u> 에 글씨 또는 그	지정문화유산
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	
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	②
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u>문화재의</u>	<u>문화유산의</u> 원상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복구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	③
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	
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 담으로 훼손된 <u>문화재를</u>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생략)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u>문화유산을</u>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유산의
지정문화유
산이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
용 등) ①
<u>문화유산</u>

매각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문</u> <u>화재</u>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u>문화재에</u> 대한 안전점검, 방재 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 시한다.
  - ③ <u>문화재</u>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6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u>「매</u>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

	<b>.</b>
	② (현행과 같음)
-	제85조 <u>(문화유산</u> 방재의 날) ①
	문화유산을
-	문화
-	<u>유산에</u>
<u> </u>	
-	- <u>문화유산</u>
-	② <u>문화</u>
-	<u>유산</u> 문화유
]	<u>산에</u>
1	
	<b>.</b>
	③ 문화유산
]	
-	
-	제86조(포상금) ①
]	<u>「매장</u>
-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L	률
!	
-	
]	

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7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 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 의하여야 한다.
  -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을 <u>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u>
     지정하는 경우
  - 2. · 3.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

<b>.</b>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1
<u>사적으로</u>
2.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 지정문화유산으로
<u> </u>

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 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 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 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 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 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 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 가 지정한 문화재
-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 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 으로 훼손한 문화재
- ⑥ (생략)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 저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문화유산
문화유산매
 매업자
1
- <u>지정한 문화유산</u>
2
문화유산
3
J.
문화유산
<u> </u>
(원왕의 필요) 제88조(청문)
00年(多年)
<u>.</u>

- 1. (생략)
- 제22조의7에 따른 <u>문화재교</u>
   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 3. (생략)
- 4.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 료소의 지정 취소
- 5. 제80조에 따른 <u>문화재매매</u><u>업자</u>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u>지</u> 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 소
-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
  - 1. 제8조제1항에 따라 <u>문화재</u>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u>문화재위원</u> <u>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u>의 위원 을 포함한다)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
교육
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ㅁ
5 <u>문화유산매매</u>
<u>업자</u>
6 지역
 문화유산돌봄센터
<u> , , , , , , , , , , , , , , , ,</u>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문화유신
보존 · 관리
문화유산위원회 위
<u> 원</u> 시·도
문화유산위원회

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 1의3. (생략)
- 2.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3. 제44조제6항에 따라 <u>문화재</u><u>조사</u>를 위탁받아 수행하는자

4. (생략)

-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
  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u>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u>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
  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
  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한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u>문</u> 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

1의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3 <u>조사</u>	
4. (현행과 같음)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
출한 문화유산을	<u>반</u> <u></u>

하거나 반출한 <u>문화재를 다시</u>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u>문</u> 화재는 몰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u>문화재를</u>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u>문화재를</u>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u>문화재의</u> 감정가 격을 추징한다.
-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u>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u> <u>문화재</u>로 지정하게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u> 문화유산을 다
<u>x]</u>
문화
유산은
<u> </u>
문화유산을
문화
<u>유산은</u>
제90조의2(추징)
<u></u> 문화유산을
<u>문화유산의</u>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u>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u>
<u> 정문화유산으</u>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u>.</u>
②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u>지</u> 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 <u>재</u>(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 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 자
- 2. <u>일반동산문화재인</u> 것을 알 고 <u>일반동산문화재를</u>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 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

   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

   작한 자
- 2. <u>제1항·제2항 또는 제1호를</u>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u>문</u> <u>화재를</u> 취득, 양도, 양수 또 는 운반한 자

<u>.</u>
1 <u>지정</u>
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
유산
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일반동산문화유산을
③
<u>&lt;삭 제&gt;</u>
2. <u>제1항·제2항을</u>
<u>문</u>
<u>화유산을</u>

- 3. (생략)
-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 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 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가중죄) ① (생 략)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u>지정</u> 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관 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 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

3. (현행과 같음)
4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
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
⑤
<u>문화유산은</u>
문화유산의
문화유산
<u>으</u>
세93조(가중죄)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정문</u>
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u> </u>

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 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 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 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 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 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 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 1. <u>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u> 재인 건조물
- 2.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 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 겨 제9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

제94조(「형법」의 준용)
1.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
문화유산
2.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
문화유산을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u>사적</u>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지정
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

<u>재</u>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2. 제35조제1항제4호(제74조제2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 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 또 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 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u>산이</u>				- – –
]99조(무허			죄)	1
1				
(보호물,				
<u>다)이나</u> 	임시지?	정문화- 	유산- 	
- <삭 제>				
<u>\                                    </u>				

자

- 3.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u>문</u> 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 2. 제56조제2항(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행위를 한 자
-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 1. (생략)
  - 2.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 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동물 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

3. (현행과 같음)
②
1 문화
<u> 유산이</u>
2
<u>등록문</u>
<u>화유산</u>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생략)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2. 제34소제5항(제74소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u>지정</u> 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 3. 4. (생략)
- 5. <u>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u>
  <u>재</u>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u>문화재를</u>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 6. (생략)
- 7. <u>지정문화재</u>로 지정된 구역 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 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 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

1(	)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_				
-				
_				
1	(현행과 같음	.)		
		,		
ے.				
		<u>7</u>	시정문:	화유
	산이나 임시기	지정문	화유산	
2	4 (청체기	<b>っ</b> し () ()		
	· 4. (현행과 지정문화유/		이 시	기저
Ο.	문화유산			
	<u></u> 문화유/	<u>산을</u>		
6.	(현행과 같음	·)		
7.	지정문화유	<u>산으</u>		

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	8
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	
여 <u>문화재를</u> 공개하거나 같	문화유산을
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	
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	
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u>문화재매매업</u> 을 하게	<u>문화유산매매업</u>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	
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	<u>&lt;삭 제&gt;</u>
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0조제1항제7호 · 제9호의 2 · 제9호의3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
   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제 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 8. (생략)
- ⑤ (생 략)

1. 제40조제1항제7호		
<u>&lt;삭 제&gt;</u>		
<b>4</b>		
1		
제8호		
2.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